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0월 16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11. 2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과기정통부장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의 폐업 등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신고(등록)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폐업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사업의 폐업 또는 정지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할 경우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1) 2024년 9월 기준 신고 또는 등록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16,175개로 이중 신고가 14,976개, 등록이 1,199개임

- 개정안은 정부 차원에서 법제처 주도로 ‘영업취소사유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영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사업의 폐업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